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 6. 26.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6월 17일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2015년 6월 26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가. 제안이유

용강동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고, 마포로1구역5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 2개의 행정동(아현동, 염리동)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용강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소재지 변경
- 토정로27길 14 → 토정로31길 31
- 2) 아현동과 염리동의 법정동 관한 지역을 조정

	현행	개정안
아현동	아현동, 공덕동 중 <u>공덕동장관할지역을 제외</u> (이하 생략)	아현동, 공덕동 중 <u>공덕동장과 염리동장 관할지역을 제외</u> (이하 생략)
염리동	<신설>	공덕동 중 <u>공덕파크자이를 포함</u>

3.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은모)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및 마포로1구역제5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이 2개의 행정동(아현동, 염리동)으로 나뉘어져 있어, 이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관할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1) 용강동주민센터 소재지를 “토정로27길14”에서 “토정로31길31”로 변경하고
 - 2) 아현동의 법정동 관할 지역 중 염리동장의 관할지역을 제외하고, 염리동의 법정동 관할 지역 중 공덕동 일부를 포함함.
- 동 조례안은 용강동주민센터가 2015.4.31 신축 이전됨에 따라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토정로27길14”에서 “토정로31길31”로 변경하고
- 마포로1구역5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2015. 8월 말까지 준공 완료되어 2015.9.10일부터 입주 예정으로, 현재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 행정동이 아현동과 염리동으로 나뉘어져 있어, 사업구역 전체의 행정동을 염리동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편의 도모는 물론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세부내용으로는
 - 1) 용강동주민센터 소재지를 “토정로27길14”에서 “토정로31길31”로 변경
 - 2) 공덕동 446-34번지 일대 11,989.2㎡를 행정구역을 염리동 관할로 행정동을 변경함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제2조 별표 중 동주민센터의 아현동, 용강동, 염리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동주민센터 (명칭)	동주민센터 소재지	법 정 동 관 할	
			전지역 관할	일부지역 관할
마포구	아현동	마포대로7길 18 (공덕동)		아현동, 공덕동 중 공덕동장과 염리동장 관할지역을 제외한 지역 및 염리동 중 150-2호, 동 151번지 지역
	용강동	토정로31길 31 (용강동)	용강동 토정동	도화동 중 공덕동장과 도화동 장이 관할하는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과 마포동 중 도화동장 이 관할하는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및 대흥동 중 대흥동 801 -63도로를 기점으로 동 328-2 도로(동막길), 동485-6에 이르는 남서지역, 염리동 중동164-3호 도로(동막길)이남 지역
	염리동	송문길 14 (염리동)		염리동 중 아현동장, 용강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및 공덕 동 중 공덕파크자이를 포함

3)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개정규정 중 용강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은 2015년 3월 30일부터 적용한다.

○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2015.6.4 ~ 6.11. 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주민의 의견은 없었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으며 용강동주민센터가 2015.4.31 신축 이전됨에 따라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토정로27길14”에서 “토정로31길31”로 변경하고 또한 마포로1구역5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2015. 8월 말까지 준공 완료됨에 따라 준공이전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동일한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동일 정비사업 구역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일하여 관할하도록 마포로1구역5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2개의 행정동인 아현동과 염리동을 전체 1개의 염리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관련부서에서 유의할 사항으로는 마포로1구역5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아파트가 준공이후 법정동과 행정동의 혼용 표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효율적인 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준공 이전에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관련공부를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개편 추진 일정별 사전점검 및 절차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